

| | |
|------|-------------|
| 문서번호 | 차량계획처-2319 |
| 등록일자 | 2022.03.24. |
| 결재일자 | 2022.03.24. |
| 공개여부 | 대시인공개 |
| 방침번호 | 본부장-44 |

| | | | |
|----|----------|----|-----|
| 주임 | 부장 | 처장 | 본부장 |
| | | | |
| 협조 | 차량계획팀 팀장 | | |
| | | | |

2022년 차량본부 작업환경측정 계획(안)

2022 .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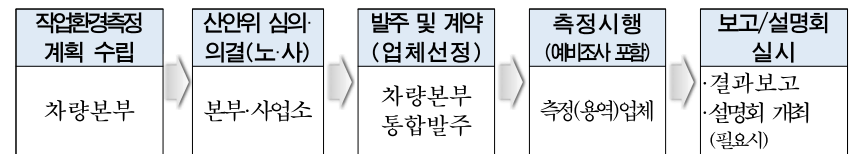


| 차량계획처

요약보고

- **용역명:** 2022년도 차량본부 작업환경측정 용역
- **추진목적:**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차량기지 작업장 내 소음, 분진, 유해 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로부터 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자 함
- **측정규모:** 11개 차량사업소 유해인자 19종 865개소
- **계약방법:** 전자공개수의계약(제한입찰)
 - 고용노동부 지정 작업환경 측정기관 (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)
 - 지역제한(수도권 - 서울 · 경기 · 인천)
- **소요예산:** 금93,098,200원(매출원가/위탁관리비/외부위탁)

■ 시행절차



■ 행정사항

- 노·사 합동 작업환경측정 운영팀 운영(공동참여)
- 작업환경 측정·평가 관련자 업무 협조 및 지원
- 측정 후 사후관리
 -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른 개선 프로세스 시행
 - 노출기준 초과시 관할 지방 노동청에 개선 계획 제출
 - 관련 법령에 의거 측정결과 보고 및 전사적 공유 실시

2022년 차량본부 작업환경측정 계획(안)

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차량기지 작업장 내 소음, 분진, 유해 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로부터 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자 함

【관련근거】

-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(작업환경측정)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(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)
- 차량계획차-736 「22년도 차량본부 사업장 안전·보건관리 시행 계획 알림」
- 2022년 차량본부 작업환경측정 노사 실무합의서('22.3.7)

I 2021년 추진현황

□ 측정개요

- 측정대상: 11개 차량사업소 유해인자 17종 918개소 (상·하반기 2회 시행)
- 계약방법: 제한경쟁입찰(기술의 보유),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)
- 계약업체: (주)한국보건환경연구소(소재지: 서울 성동구)
- 발주금액: 금93,893,600원(계약금액: 금74,535,270원)

□ 측정결과

| 구 분 | 화학적 유해인자 (광물성 분진, 유기화합물 등) | 소음(측정최대치)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측정결과 | 법정 노출기준초과 항목 없음 | · 90dB(유해기준) 이상 : 없음. · 85dB 이상 : 4개 사업소 (군자, 지축, 고덕, 신내)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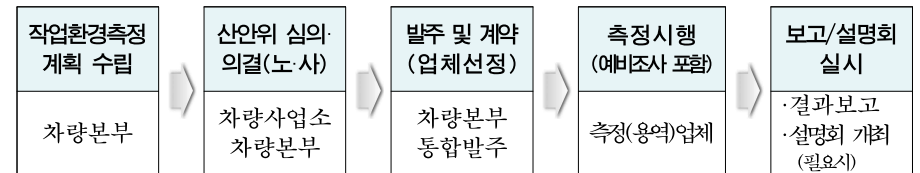
- 후속조치: 사업소별 권고사항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 조치 및 소음저감 대책 마련 추진 예정

II 2022년 추진계획

추진방향

- 차량본부 11개 차량사업소 작업환경측정 실시(상·하반기 통합)
- 소음 측정시 순간음압(피크치) 측정 포함
- 협력업체 수급인의 작업장소 포함 실시
-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른 개선프로세스 시행

□ 시행절차



□ 측정내용

- 측정항목: 소음, 분진, 유기화합물, 산과 알칼리 등 19종 865개소
- 측정개소: 11개 차량사업소 865개소 (세부내역 '붙임2' 참조)
- 사업소별 측정개소

| 계 | 군자 | 신정 | 지축 | 수서 | 창동 | 고덕 | 도봉 | 방화 | 신내 | 천왕 | 모란 |
|-----|-----|----|-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
| 865 | 147 | 99 | 172 | 44 | 34 | 99 | 78 | 58 | 38 | 57 | 39 |

- 측정 유해인자

| 계 | 소음 | 분진 (호흡성, 응집흡) | 금속류 | 유기 화합물 | 산과 알칼리 | 기타항목 | | | | |
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|-----|
| | | | | | | 암모 니아 | 오일 미스트 | 미세 먼지 | 라돈 | 전자파 |
| 865 | 205 | 248 | 211 | 148 | 31 | 4 | 1 | 3 | 7 | 7 |

- ※ 2022년 차량분야 작업환경측정 노사 실무합의에 의하여 측정항목 및 규모 선정(붙임1)
- 차량계획차-1891('22.3.8.) 「2022년 차량본부 작업환경측정 관련 노·사합동회의 결과보고」
- ※ 측정업체의 예비조사결과 사업소별 측정항목 및 수량 변동 가능

1) "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"에 따라 실시한 2018년도 지정측정기관 평가결과 A등급 이상인 업체

Ⅲ 세부 추진계획

□ 2022년 차량분야 작업환경측정 용역 추진

- 용역명: 2022년 차량본부 작업환경측정 용역
- 용역기간: 계약일로부터 2022년 12월 09일까지
- 측정대상: 11개 차량사업소 유해인자 19종 865개소(상·하반기 통합)
- 계약방법: 전자공개수의계약(제한경쟁)
 - 물품·용역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전자공개 수의계약가능²⁾
 - 입찰자격조건

1)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지정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
2) 지역제한 : 수도권(서울, 인천, 경기)

-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지 제7조(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의 수·담당지역)에 의거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의 담당지역은 관내 측정대상사업장의 수, 업종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.

☞ 11개 차량사업소 현장 측정 관련, 주·야간작업 및 각각의 공정 일정을 고려한 원활한 작업환경측정을 위하여 수도권 안에 주된 영업을 둔 업체로 제한

○ 소요예산

- 예산과목: [매] 위탁관리비 / 외부위탁
- 소요예산: 금93,098,200원³⁾ [붙임3]

□ 사후관리

- 작업환경측정결과 개선프로세스 시행
 - 측정결과에 따른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 사업소 실정에 맞는 작업환경 개선 대책 수립 및 시행
- 노출기준 초과 시 개선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방 노동청에 제출

Ⅳ 행정사항

□ (차량사업소) 노·사 합동 작업환경측정 운영팀 운영

- 구성 : 팀별 노사(업무)담당자, 안전·보건관리자 등(공동참여)
- 임무 : 측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임무수행
 - 작업장 특성, 업무별 작업공정 파악 등을 위한 자료제공
 - 측정기관의 성실한 조사 시행여부 감독 및 작업장 출입협조
 - 작업환경측정 관련 업무지원 및 이례 상황 시 보고 등

□ 작업환경 측정/평가 관련 업무 협조 및 지원

- 측정 및 평가 관련 입회 직원의 소속별 근무협조
- 측정기관 및 입회 직원의 안전사고 예방 관리 철저 시행
 - 작업관련 기본안전수칙 통보 및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등
 - 사회적 거리두기,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
- 측정대상 작업공정 작업자에게 측정 항목, 일정 등 사전 공지
- 측정기관의 예비조사 및 본조사 시 적극협조 지원

□ 결과보고 및 공유

- 결과제출: 관할 지방 노동청 및 보건환경처 측정결과 제출⁴⁾
- 전사포털 내 측정결과 게시 (업무마당) 안전분야) 작업환경측정)

- 붙임 1. 2022년 차량본부 작업환경측정 노사 합의서 1부.
2. 작업환경측정 사전 계획물량 1부.
3. 발주명세서 및 예산산출기초조사서 등 1부.
4. 견적서 및 표준단가표 1부.
5. 작업환경 측정 관련법령 요약 1부. 끝.

2) 계약처-12341('21.12.21.) 「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기간 연장 알림」
3) 실거래가(견적서)와 표준단가표에 의한 예가산출(붙임3)

4) 산업안전보건법 제188조 ② (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): 측정 후 30일 이내 보고